

##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키 재판매 저작권 침해 방조 인정 사건

(2022.4.14. 선고 대법원 2021다303141판결(반소)<sup>1)</sup>,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 쟁점** 'Windows 10' 정품 인증 제품 키만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 사용자가 'Windows 10'을 복제·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원고 공인 인증 판매자를 통하여 정식으로 취득하여야 함.
  - ☞ 원고가 'Windows 10' 설치 파일을 원고의 공식 사이트로부터 무료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식 사용권을 취득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 피고의 정품 인증 제품 키 재판매 행위는 'Windows 10'의 사용권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무형물인 소프트웨어는 배포 권 권리 소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함.

**시사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인증받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Windows 10' 정품 인증 제품 키 혹은 사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심급	1심 (원심)	2심 (항소심)
당사자	(반소)원고 <sup>2)</sup> : 마이크로소프트 (반소)피고 : 주식회사 그린에코에너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46063	2021나2008789
선고일자	2021.2.5.	2021.11.18.
판결결과	원고 승소	원고 승소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16호, 제46조)	

1) 해당 사건의 본소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저작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자세히 다루지 않음  
2) 이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소 기준으로 원고, 피고 지칭

## 사건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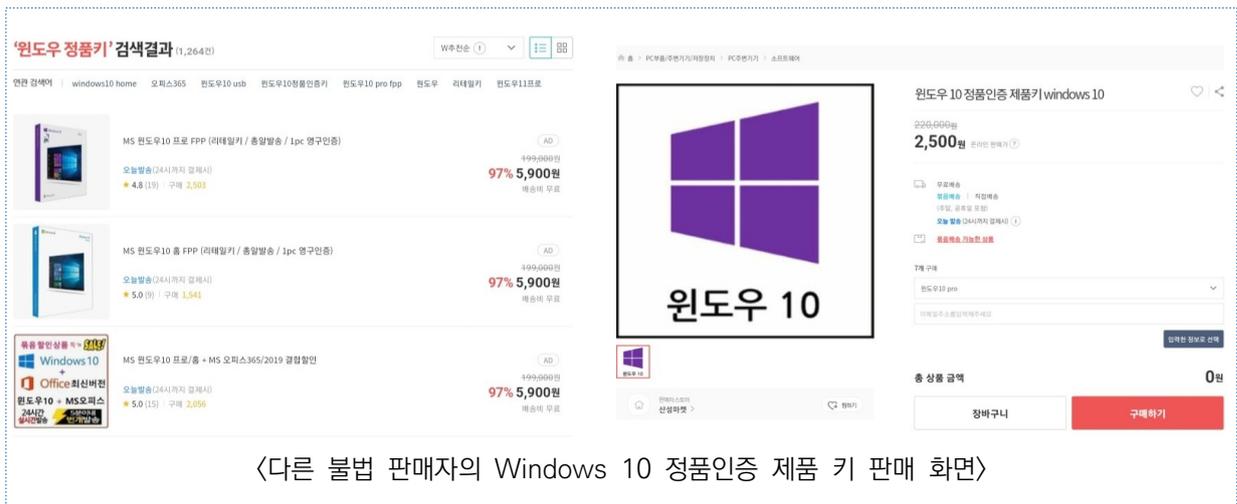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10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이하 ‘Windows 10’)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원고의 사용권 판매 방식 중에는 설치 파일이 포함된 USB와 정품 인증 제품 키를 패키지로 함께 받는 Full Package Product(FPP) 방식, 공인 인증 판매자로부터 정품 인증을 위한 제품 키를 구매하여 이메일로 수령하고, 설치 파일은 별도로 원고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ESD) 방식이 있음. 피고 그린에코에너지는 원고와의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별도의 경로<sup>3)</sup>를 통하여 Windows 10의 제품 키를 구매하였음. 피고는 이렇게 구매한 제품 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사용자는 원고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제품 키로 정품 인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ESD 방식)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이전등록<sup>4)</sup>·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반소)<sup>5)</sup>

## 법원의 판단

### 1. 주요 법리

-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 3) 피고는 원고의 공식 인증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았음.
- 4) 피고 그린에코에너지는 도메인 이름 ‘windows10.asia’를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10을 재판매하고 있었던 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였고, 그린에코에너지는 이러한 이전등록 청구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sup>4)</sup>의 소를 제기하였음.(본소)
- 5) 본지에서는 반소의 “침해정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었음.

## 2. 'Windows 10' 사용권 계약서 내용

- ☞ 사용자가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때 'Windows 10 운영체제에 관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사용권 계약')에 동의해야만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권 계약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 설치 및 사용권한.

a.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는 장치(사용권이 허용된 장치)에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 하나를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에 한해 한 번에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c. **제한.** 본 사용권은 귀하에게 다음의 어떠한 권리도 허용하지 않으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iii) 소프트웨어를 양도하는 행위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4. **양도.** 독일 또는 이 사이트<sup>6)</sup>에 나열된 국가의 소비자로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사용 권한이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취득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를 다른 사용자에게 직접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한 장치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i) 귀하가 소프트웨어의 원래 사용권 취득 사용자이고 (ii) 새로운 사용자가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소유한 장치로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략)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새 장치로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 장치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5. **승인된 소프트웨어 및 정품인증.** 귀하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허여받았으며 소프트웨어가 정품 제품 키 또는 다른 승인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정품 인증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정품인증에 성공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정품 인정되었는지 또는 적법하게 라이선스가 허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 ☞ 사용권 계약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 공인 인증 판매자를 통하여 정식으로 'Windows 10'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 계약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용자에게만 복제·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6) 해당 사이트에서는 독일 외의 다른 국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aka.ms/transfer)

### 3. 피고의 중고 제품 키 양도가 사용권 양도가 될 수 있는지 (부정)

#### ㉠ 피고의 중고 제품 키 양도가 원고가 허용한 행위인지 (부정)

사용권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음(사용권 계약 제2조 제c항 (iii)호). 허용되는 사용권 양도가 되려면 사용권 계약 제4조 제b항에 따라 ‘자기 소유 장치로의 이전 → 제3자 소유 장치로의 이전 → 종전 장치에서의 소프트웨어 제거 의무 → 장치 간 사용권 공유 금지’의 순서 및 조건을 지켜야만 함.

그러나 제품 키만 재판매하는 피고의 영업행위는 사용권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권 양도 방법이 아니고, 피고가 구매한 제품 키의 이전 소유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면 피고의 제품 키 판매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원고가 설치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중고 제품키 이용허락인지(부정)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저작권자가 그러한 복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일반적인 이용허락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원고는 공식 사이트에서 ‘Windows 10’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페이지에서 “설치를 시작하려면 프로그램 설치 라이선스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이는 무료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사용자가 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 ‘Windows 10’에 권리 소진의 원칙<sup>7)</sup>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정)

피고는 사용권 계약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온라인 방식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리에 따라, 최초 사용자가 원고로부터 정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하면 원고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 회사가 국내 회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의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sup>8)</sup>이며,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에서 무형물인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따라서 ‘Windows 10’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7)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원칙.(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조항)

8) 국제사법 제24조, 제32조 제1항

## 4. 결론

㉔ 원고로부터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 즉 피고로부터 취득한 제품 키로 정품 인증을 한 것은 사용권 계약 제5조에 따라 정상적인 인증이 될 수 없고, 정식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로부터 제품 키를 구매하여 ‘Windows 10’을 내려받고 인증하는 것은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Windows 10’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품 키를 재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sup>9)</sup>에 해당함.

###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Windows 10’의 판매 방식과 사용권 계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용권 양도 조건에 주목하여 피고의 정품 인증 제품 키 재판매 행위가 원고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피고로부터 제품 키를 구매한 사용자가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라고 보았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많은 사용자가 본인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와 같은 비공식 판매자로부터 제품 키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 있는 판결인 것으로 생각됨.

관련하여 피고와 유사한 형태로 ‘Windows 10’ 정품 인증 제품 키를 10,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으며(32만원 정품 ‘윈도 10’이 3천원? 써도 문제없나, 2020.01.15./뉴스데스크, <https://youtu.be/LIopICpXXsk>), 22년 7월 현재에도 몇몇 판매자가 유사한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문제는 이번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며 제품 키를 통하여 정품 인증을 하고 ‘Windows 10’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임. 또한 불법 판매자로부터 정품 인증 제품 키를 구매하여 ‘Windows 10’의 정품 인증 절차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 키가 언제 만료되어 이용 불가능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증 이후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Windows 10’ 정품 인증 제품 키는 구매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인증받은 공식 판매자로부터 ‘Windows 10’ 적절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할 것임.

※ 본지의 의견은 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서체목록

KoPubWorld돋움체, KoPubWorld바탕체, 경기천년체

9) 제품 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복제 또는 배포된 제품 키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품 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